

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414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.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개정이유

저소득층 시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생계곤란이나, 생업을 위한 영세 상행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융자범위를 확대하고,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- 가. 융자범위에 직계비속의 학자금을 신설 (안 제5조)
- 나.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율 인하(안 제6조)
 - 당초 : 연100분의15 ⇒ 변경 : 연100분의10

개정조례안 : 덧붙임

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관계법령 : 해당사항없음

예산수반상황

입법예고

2009. 11. 23일부터 20일간

부서협의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융자대상 및 범위)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한다.

1.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
2. 천재지변,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
3.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
4.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자금
5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.

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 100분의 15”를 “연 100분의10”으로 한다.

다만, 학자금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주민생활지원실
입 안 자	실 · 과장	주민생활지원실장 홍 현 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활지원담당 송 기 훈
	담당자 성명·전화	조 미 정 (860-2366)

신·구조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용자대상) ① 자금의 용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.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.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 한다.</p>	<p>제5조(용자대상 및 범위) ① 자금의 용자대상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. 천재지변,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.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.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자금 5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 한다.</p>

신·구조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융자금액등) ① 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하며,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한다.</p> <p>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3으로 하되,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융자금액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학자금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연 100분의 10----- ----- -----</p>